

(체육정보시스템)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계획

2019. 10. 15.(화) 대회운영부

1 목적

-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2020. 1. 1.부터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심판 등록 전면 의무화
- 시스템 전체 오픈 이전 가오픈을 통한 안정성 확인 및 개선·보수 작업 시행
- 심판등록절차 및 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심판·담당자의 관련 업무 이해도 사전 증진 도모

2 시범운영 개요

- 운영기간: 2019. 11. 1. ~ 12. 31.(화) (2개월)
 - 운영대상: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소속 심판
 - 유지보수 용역업체: 진진시스템(주)
 - 운영방향
 - 경기인등록규정 내 심판 등록 의무화 조항의 효력 발생일(시행일: 2020.1.1.) 이전이므로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기간 중 심판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
 - 시범운영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확인 및 개선·보수 작업 이행
 - 심판등록시스템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회원종목단체 담당자, 심판의 이해도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스템·규정 교육 및 홍보 병행
- ※별도 계획 수립 후 안내 예정

3 업무추진 일정

업무내용	담당	업무추진 일정																
		10월				11월					12월					1월		
		1	2	3	4	1	2	3	4	5	1	2	3	4	5	1		
시범운영 계획수립	대회운영부																	
시범운영 사전준비	진진시스템/정보화팀																	
협조공문 발송(정보화팀)	대회운영부																	
안내공문 발송(회원종목단체)	대회운영부																	
시범운영																		
시스템 개선·보수	진진시스템																	
시스템 및 규정 교육/홍보	대회운영부/진진시스템																	
시스템 정식오픈																		

4 심판 등록 원칙

※세부 규정: 붙임1 참조

○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전/후 심판 등록 관련 사항 비교표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(2020. 1. 1.)	관련 조항
심판등록시스템	별도 심판등록시스템 X	·별도 심판등록시스템 O	-
등록의무	심판 자격 획득 후 별도 등록 의무 없음	·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 필수	제30조 (등록 및 신청)
등록절차	심판 자격 획득 후 별도 등록 절차 없음	·심판 자격 획득 후 심판등록시스템을 통해 회원 종목단체에 심판 등록을 신청	제32조 (심판등록절차)
활동자격	심판 자격 획득 시 심판 활동 가능	·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 활동 가능	제34조 (활동자격)
활동자격 유지기간	영구 유지	·심판 등록 당해연도만 유지 *매년 신규 등록 필요	제30조 (등록 및 신청)
등록결격사유	-	·당해연도 선수(전문/동호인)로 등록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등록 불가 ·당해연도 심판으로 등록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 단체의 전문선수/동호인선수 등록 불가	제33조(등록결격사유) 제17조(등록결격사유) 제27조(등록결격사유)

5 규정 개정에 따른 심판 등록 절차



※심판 자격증 번호는 종목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바, 담당자 직접 입력 필요

※심판 등록기간은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,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종목단체가 별도 기간을 정하여 운영 가능 *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함

6 심판 등록/승인 방법

○ (심판) 심판 등록 방법 ※세부 매뉴얼: 붙임2 참조

- ① 스포츠지원포털 접속(<http://gl.sports.or.kr>)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“전문체육” 배너 클릭 → “심판등록 및 확인/수정” 클릭

- ② 심판 등록 희망 종목 선택 → “신청하러가기” 클릭
- ③ 심판 등록 희망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,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수행
- ④ “신청서 작성” 클릭 →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
- ⑤ 기본정보 확인 및 체육인번호 발급(또는 확인) → 상세정보 입력 → 심판 자격사항 입력 → 연수 및 교육, 학력, 상훈 등 정보 입력
- ⑥ 신청 내용 확인 후 “신청서 저장” 클릭

○ (회원종목단체) 심판 등록 승인 방법 ※세부 매뉴얼: 붙임3 참조

- ① 체육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“선수·지도자·심판관리” 클릭 → “등록관리” 클릭 → “심판관리” 클릭 → “심판정보등록” 클릭
- ② 검색조건에서 종목명 선택 → 등록구분 “등록신청” 선택 → “심판 명부출력” 클릭
- ③ 심판등록 신청대상자의 개인번호 또는 이름 클릭 → 상세정보, 자격정보, 추가정보 등 조회 → 자격정보 확인 및 자격증 번호 입력
- ④ 심판 정보 최종 확인 후 “승인” 또는 “비승인” 클릭

7 유의사항

○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기간 중 등록된 심판의 등록 유효 기간

-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완료한 심판의 경우에도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(등록 및 신청)에 의거, 내년도 심판 활동을 위해서는 2020. 1. 1. 이후 심판 재등록 필요

경기인등록규정(2019.1.31.) 제4장 지도자·심판 등록
 제30조(등록 및 신청) (중략) ②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**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.** [시행일: 2020.1.1.]

○ 문의 및 건의사항

- 규정/행정 관련 문의처
 -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임정민 주무(02-2144-8066)
- 시스템 관련 문의처
 - 진진시스템 콜센터(070-4810-4517)